

# 계룡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제 161 호                |
| 의결년월일 | 2004. 9. .<br>(제 10 회) |

|      |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|
| 제출일자 | 2004. 8. . |
| 제출자  | 계 룡 시 장    |

## 1. 개정이유

- 변화와 혁신, 지방분권, 국가균형발전 등 국가 주요시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『혁신분권』 담당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『혁신·분권담당』 설치
  - 분장사무 : 변화와 혁신, 지방분권,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

## 3. 참고사항

- 정원조례 승인 (제9회 임시회 : 2004. 8. 17)
  - 인원 : 2명 (행정6급 1, 행정8급 1)
- 관련법령
  - 지방자치법 제102조(행정기구) 및 제104조(직속기관)
  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
  - 계룡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제2항제1호
- 참고자료
  -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 담당기구 설치 지침
    - ※ 행자부 자치제도과-797(2004. 4 .26)호
  - 신·구조문대비표

## 계룡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계룡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중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서. 변화와 혁신, 지방분권,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 련 법 령(발 취)

### □ 지방자치법

**제102조 (행정기구)**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, 시·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·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.

**제104조 (직속기관)**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·교육훈련기관·보건진료기관·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### □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

**제10조 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** ①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 및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 및 실·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②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여 실·국 또는 실·과·담당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·군·구는 그 설치기준의 범위안에서 실·국 또는 실·과·담당관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.

③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고 있는 시의 시장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 본청의 실·과·담당관의 정수의 일부를 관할 자치구가 아닌 구의 정수로 조정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다.

④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 및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⑤시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서달할 수 있다.

⑥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 및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## □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

제3조 (실·과의 설치) ①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, 총무과, 시민봉사과, 복지문화과, 환경녹지과, 농업경제과, 건설과, 도시주택과를 둔다.

②실·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.

### 1. 기획감사실장

가.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

나. 시장 공약사항 관리

다. 시의회 지원 협력 및 총괄 조정

라. 주요정책의 개발·심의·조정 및 시정종합발전계획과 특별과제 연구

마.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 지원, 시민의식함양운동 추진

바. 민·군·관 화합행사 추진 및 지원

사. 계룡대 지원·협의 및 계룡협조회 구성·운영

아. 군관련시설 유치지원 및 군시설에 대한 민간견학 안내지원

자. 시 예산편성관리 및 재정운영계획 수립 추진

차. 경영수익 실태분석 및 주요사업 투자심사

카.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

타. 공무원의 문책·징계 요구

파. 시정에 대한 주요 사항의 홍보, 시보 및 시정홍보물 발간

하. 공고·고시에 관한 사항

거. 시정홍보위원 및 홍보조직(DM망) 운영

녀. 시정기록 사진촬영 및 홍보용 사진 관리

더. 시정홍보자료 작성제공 등 언론사간의 연계 체제 유지

러. 신문·잡지 등 구독 계획 수립 및 자료관리

머. 통계에 관한 사항

버. 행정정보화 및 전산정보에 관한 사항

# 참 고 자 료

## 地方自治團體 革新分權擔當機構 設置指針

### I. 設置背景

#### □ 大統領權限代行 業務報告('04.3.25) 後續措置 推進

-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추진력 확보 지원 필요
- 지방자치단체 공직사회가 먼저 「변화와 개혁」을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있는 動因을 부여
- 지역단위 자체혁신을 통해 자치역량을 확보하고, 나아가 21C 글로벌시대에 맞는 국가경쟁력 제고 추진

#### □ 地方分權 및 均衡發展 促進

-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정부의 분권·분산 정책에 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수용기반 마련
- 정부부처, 정부혁신·지방분권위원회와 자치단체간 유기적 지원·협력 등 추진체제 구축
-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「지방분권 추진 로드맵」의 차질 없는 실현을 가시화하기 위해 전담기능 보강

#### ⇒ 혁신·분권·균형발전 3대 과제를 추진하는 「先導組織」 설치

##### ◇ '04. 3.25, 행정자치부 대통령권한대행 연두 업무보고

- 자치단체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 
시·도, 시·군·구에 「혁신담당기구」 신설 유도, 혁신기조 확산

## II. 自治團體의 機構設置 必要性

### □ 參與政府의 國政理念인 「變化와 革新」의 先導組織 必要

- 자치단체의 자체혁신을 주도할 총괄·조정기구 필요
  - 자체혁신과제 발굴, 추진상황 관리, 점검·평가 등
- 자치단체 내부혁신 체계를 구축, 혁신 추진의 주도적 역할 부여
- 중앙정부(위원회) - 시·도 - 시·군·구간 협력·연계체계 구축으로 「혁신과 분권」의 효율적 추진

### □ 地方分權·均衡發展法上 義務的 業務 推進

지방분권특별법, 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자치단체의 책무 및 관련시책 추진 및 자체혁신 업무수행 필요

- 지방분권 추진
  -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·재정 효율성 제고 등 개선(§5②) 자치단체간 사무 배분·재배분,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(§6④) 지방의정 활성화(§13),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행정체제 정비 (§15)
- 균형발전 추진
  - 지역혁신발전계획·시행계획 수립(균특법 §6·7), 산·학·연 협력 등 지역혁신체계 구축(§10), 지역전략산업의 선정·육성(§11) 등

#### 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의견('04.2.4) ▶

- ◇ 시도의 행정혁신과 지방분권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전담기구 설치
- ◇ 자체혁신 및 분권에 관한 총괄·기획 조정, 혁신·분권과제 발굴, 추진상황 관리·점검 평가 등 담당

### III. 自治團體의 革新分權擔當機構 設置 指針

- ◇ 자치단체 혁신 및 분권·균형발전 兩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업무 증가를 고려하되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감안, 최소 규모로 설치
- ◇ 지방분권특별법 유효기간('09. 1), 지방이양지원팀 존속기한('08. 6) 등과 연계, 한시기구로 설치

#### 1 組織의 任務

- 자치단체 스스로 “자율과 분권의 시대”에 맞게 자기혁신을 통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
  - 자체 혁신과제 발굴·추진계획 수립·추진상황 관리 등
- 지방분권·균형발전 추진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구현을 담당하는 구심적 역할
  - 분권·균형발전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고, 각각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각 기능별로 임무를 수행하되
  - 체계적·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총괄·기획·조정 및 지원을 담당하는 기능 보강
- ※ 분야별 과제 발굴-추진계획 수립·보고-추진상황 관리·평가 및 지방차원의 자문(기획·추진) 위원회 운영 등
- 중앙정부(위원회) - 광역자치단체 - 기초자치단체간 협력·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시책 추진
- ⇒ 혁신·분권·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차원의 목표설정 및 정책 추진 動力 확보(※ 혁신·분권 담당기구의 업무분장案 : 별지 참조)

## ② 機構의 規模・存續期限

### ① 市・道の 機構・定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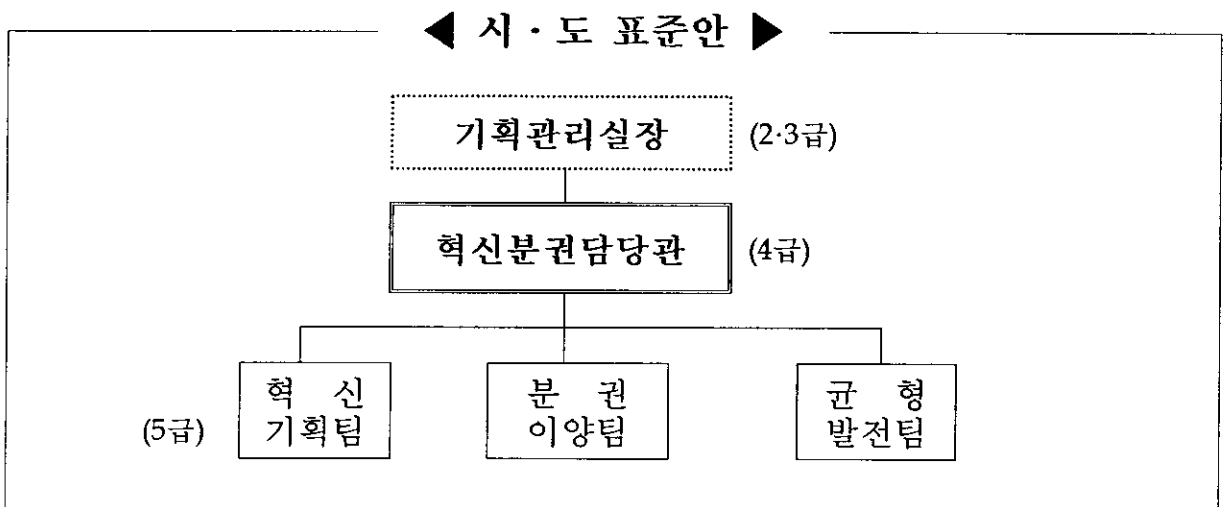
○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「혁신분권담당관」 설치

▷ 기구표준안 : 혁신분권담당관(4급), 혁신기획·분권이양·균형발전팀장(5급)

▷ 정원표준안 : 지방서기관1명, 행정5급2명, 행정·토목5급1명, 6급6명, 7급이하1명 총 11명 내외

※ 제주도는 지방서기관1명, 행정5급3명, 행정6급3명, 7급이하1명 이내

○ 이 기구·정원의 존속기한은 '07.6.30까지 임



### ② 市・郡・區의 機構・定員

○ 기획부서 소속으로 「혁신분권담당」 설치

▷ 기구표준안 : 혁신분권담당(6급)

▷ 정원표준안 : 행정6급1명, 행정7급이하 2명 총 3명 내외

○ 「혁신분권담당」에 책정하는 정원의 존속기한은 '07.6.30까지임

## IV. 行政事項

### ① 機構・定員의 策定에 관한 事項

- 이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혁신분권담당기구의 정원 중 시·도의 5급이상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확정
  - 시·도(서울제외) : 지방서기관 1, 지방행정사무관 2,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1
  - 서울특별시 : 지방서기관 1 (지방5급은 자체 책정)
- 6급이하 정원은 현재 정원이 표준(보정)정원 이내인 자치단체(시·도 및 시·군·구)는 자체적으로 정원 책정 보장
  - 이미 표준(보정) 정원을 초과하였거나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로 표준(보정) 정원을 초과하게 되는 자치단체는 시·도별로 시·군·구 해당사항을 파악하여 일괄 승인 요구
- ※ 우리부에서 전국 일괄승인 조치할 계획임

### ② 機構 設置 및 推進狀況 報告

- 자치단체에서 이미 혁신·지방분권·균형발전 업무를 추진 중이므로 가급적 5월 중으로 기구 설치 완료
- 한시기구·정원의 일괄승인 및 추진상황 파악을 위한 기구설치계획을 종합하여 별지 서식으로 '04. 5. 3까지 도에 보고(기구·정원승인사항 포함)

## 〈資料〉

# 革新・分權專擔機構의 業務(案)

## ① 혁신기획팀

### ○ 자체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

- 자체 업무혁신 과제 발굴, 우수사례(우수기업 등) 벤치마킹
- 시·도정(시·군·구청) 혁신·발전 연구모임, 변화와 혁신 추진협의회 구성, 직원·이해집단 대상 연찬 등 혁신인프라 구축
- 업무 Process·조직문화 개선, 고객서비스 제고, 홍보·혁신 마인드 제고, 자체시책의 개선, 성과 전파, 자체평가·환류시스템 등

### ○ 지방분권·균형발전 업무 총괄

- 지방분권·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는 자치단체의 관련업무 추진 총괄 (과제발굴, 지역단위 종합계획 수립, 추진상황 점검, 평가 등)
- 지역단위 혁신·분권·균형발전 네트워크 구축

## ② 분권·이양팀

### ○ 지방분권특별법상 자치단체의 역할 담당

-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업무 전반 협력 및 지방분권특별법상 자치단체 수행사항 이행

### ◀ 지방분권특별법상 자치단체의 역할 ▶

- ◇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·재정 효율성 제고 등 개선 조치 마련 (§5②)
- ◇ 자치단체간 사무 배분·재배분, 민간에 대한 관여 최소화 및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(§6④)
- ◇ 자체세입 확충, 예산지출의 합리성 확보,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(§11④)
- ◇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(전문성, 교육훈련제도, 인사교류 등)(§12③)
- ◇ 지방의정 활성화, 지방선거제도 개선 노력 (§13)
- ◇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 장려·지원, 주민참여 의식 제고 (§14②)
- ◇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행정체제 정비, 중복감사 개선 (§15) 등

-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업무전반 협력
  - 자료제출, 지방이양대상사무 조사 및 의견 조사
    - ▷ 중앙-지방간 사무배분, 자치단체간 사무배분
    - ▷ 회의출석·발언, 지방이양 추진상황의 보고, 재정지원협의기구에의 참여 등
- 지방분권추진 과정에서의 자치행정의 종합성 제고와 관련된 사항

### [3] 균형발전팀

- 국가 균형발전관련 업무의 지방적 추진 총괄·조정
  - 지역단위 지역혁신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(균특법 §6·7) 및 추진상황 점검·관리, 자치단체내 부서간 지역혁신업무 연계
- 중앙정부-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지방연계 추진
  - 중앙(위원회) - 시·도 - 시·군·구 연락·조정
- 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(§28·§29)·운영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·운영

#### ◀ 균형발전특별법상 자치단체의 역할 ▶

- ◇ 관련예산 확보 및 관련시책을 수립·추진(§3)
- ◇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협조(§5)
- ◇ 5년단위 지역혁신발전계획·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수립(§6·7)
- ◇ 지역혁신체계의 구축(§10)
- ◇ 지역전략산업의 선정·육성(§11), 지방대학의 육성(§12),
- ◇ 지역과학기술의 진흥(§13), 지역정보화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(§14),
- ◇ 지역문화·관광의 육성(§15),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(§16),
- ◇ 지역경제활성화의 촉진(§17), 공공기관의 지방이전(§18),
- ◇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(§19),
- ◇ 시·도 지역혁신협의회 설치(§29)

# 참 고 자 료

## 【신 · 구조문 대비표】

| 현 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 정 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제3조 (실 · 과의 설치) ① (생 략)</p> <p>②실·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기획감사실장</p> <p>가. ~ 버.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제3조 (실 · 과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실·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기획감사실장</p> <p>가. ~ 버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서. 변화와 혁신, 지방분권, 국가</u></p> <p><u>균형발전에 관한 사항</u></p> |